

고용노동부 차관,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점검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3일(목) 13:30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

** ▲시공사: 롯데건설(주), ▲소재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공사금액: 4,589억원

이날 점검은 6월 27일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지난 5월 28일 발표한 폭염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직접 챙기고, 무더위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통한 폭염 노출 최소화, 특히,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 시에는 철저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현장관계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31도 이상은 2시간마다 10분, 33도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시원한 물 제공과 고령자 등 민감군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데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공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폭염작업의 힘들과 위험함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폭염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자율개선기간 운영(6.2.~6.20.) 이후 감독 체제로 전환(6.23.~)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중점 지도·감독하고 있다.

참고 1: 현장방문 개요

참고 2: 온열질환 예방지침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044-202-8893)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895)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신정욱 (044-202-8937) 김병석 (044-202-8939)



참고 1

현장방문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25. 7. 3.(목) 13:30~14:30
- (장소) 서울 소재 건설공사 현장
 - * 현장주소 : 서울 용산구 이촌로 303
- (주요 참석자) 고용노동부 차관, 롯데건설(주) CSO
 - (노동부) 차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지도과장, 감독관 등
 - (건설사) 롯데건설(주) CSO, 안전보건 부문장, 건축안전팀 담당임원, 현장소장, 협력사 대표 등

□ 주요내용

- 고위험 사업장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집중 감독
 - * 5대 수칙: ❶ 시원한 물, ❷ 냉방장치, ❸ 휴식(2시간마다 20분), ❹ 보냉장구 지급, ❺ 119신고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 ~ 13:50 <간담회>	• 폭염 대비 추진현황(5') • 현장의견 청취(15')	• 발표: 안전보건 부문장 • 참석자 전체
13:50 ~ 14:30 <현장 점검>	• 현장 점검(40')	• 동선: 간담회실 → 휴게시설 → 골조공사(노동자 면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p>*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p>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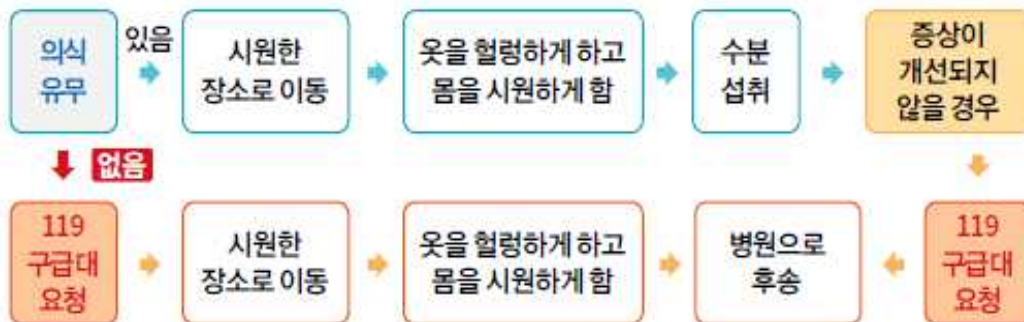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